

세 무 서

수신자
(경유)

제 목 근로장려금 ·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

귀하가 ()년 ()월에 신청한 ()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신 청 인	성 명	생 년 월 일		
	주 소			
1. 결정 내용 (년 소득분) (단위: 원)				
구 분	결 정 금 액	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	환 수 (차 감) 액	지 급 금 액
근로장려금				
자녀장려금				
계				
2. 결정 근거				
(예시)				
1.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 1억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이 50%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(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5제4항)				
2. 귀하가 신청하신 반기 근로장려금은 15만 원 미만이므로 지급되지 않고 추후 정산 시 지급됩니다.(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8제5항)				
3. 반기 신청자는 추후 정산 시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. (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8제8항)				
3.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				
A형. 2021.8.26. 근로(자녀)장려금이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. (신한은행 계좌: 9003251440***)				
B형. 2021. 8. 26.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하시기 바랍니다. (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, 국세환급금 통지서, 위임장 지참)				
※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국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				

세 무 서 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4.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(년 소득분) (단위: 원)

환수대상 금액			당해연도 환수한 금액			미환수액 (⑦=①-④)
계 (①=②+③)	전년 이월 미환수액 (②)	당해연도 발생액 (③)	계 (④=⑤+⑥)	근로 장려금 (⑤)	자녀 장려금 (⑥)	

< 환수내역 안내사항 >

1. **환수대상 금액의 계(①)**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(②)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(③)의 합계입니다.
 - 당해연도 발생액(③)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.
2. **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(④)**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(⑤)과 자녀장려금(⑥)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.
3. **미환수액(⑦)**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(①)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(④)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 - **미환수액**은 5년간 발생하는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, 5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. 다만,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.